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9. 4.26.]
[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19. 9.20.]
[전면개정 2021. 4.27.]
[일부개정 2021.12.21.]
[일부개정 2022.10.31.]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지방공공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 다. 지방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이지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지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